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규정(세칙) 신규 대조표

2019.09.11.

규정	현행	개정	비고
20-3. 연구실적심사세칙			
제 7 조 (평가 배 점)	① 평가 총점은 부서장 보직에 있는 <u>수석연구위원</u> 은 20점으로 하고	① 평가 총점은 부서장 보직에 있는 <u>수석.책임연구위원</u> 은 20점으로 하고(수정)	부서장 자격요건과 일치
제 18 조 (원 내 연구실적 인정)	제6조 1항이 처음 적용되는 <u>평가대상연도(2014년)</u> 에는 일반 연구실적으로 원내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1항이 처음 적용되는 <u>평가대상연도</u> 에는 일반 연구실적으로 원내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다.(수정)	진흥원 설립전 연도 오기로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세칙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20-4.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			
[별표1]	연구직 신규임용시 경력 인정 기준	연구직 신규임용시 경력 인정 기준(수정)	

규정	현행		개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경 력 종 별</p> 1. (생략) 2. 학사학위 취득기간(3~4년에 한함) 3. 박사학위 취득기간(2-3년에 한함) (생략) 4. (생략) 5. (생략) 6.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한 년수 가. 주당 10시간 이상 나. 주당 9시간 다. 주당 8시간 라. 주당 7시간 라. 주당 6시간 마. 주당 5시간 이하 7.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환산율</p> 100% 100% 100% 100% 100% 90% 80% 70% 60% 50%	<p style="text-align: center;">경 력 종 별</p> 1. (생략) 2. (삭제) 3. 박사학위 취득기간(2년에 한함)(고등교육 법 제31조 준용)(수정) (생략) 4. (생략) 5. (생략) 6.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한 년수(수정) 가. 주당 10시간 이상 나. 주당 9시간 다. 주당 8시간 라. 주당 7시간 라. 주당 6시간 마. 주당 5시간 이하 7.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환산율</p> 100% 100% 100% 50% 45% 40% 35% 30% 20%	<p>비고 : 경력 인정은 증빙서(경력증명) 에 의 해 환산한다.</p> <p>비고 : 경력 인정은 증빙서(경력증명서와 4 대보험가입증명서) 에 의해 환산한다.(수정)</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세칙 개정 따른 부칙 추 가